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금원(金員)’ 을 ‘금품’ 으로 용어 변경〉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4500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 인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금원(金員)’을 ‘금품’으로 용어 변경	2

I .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출연월일 : 2024. 10. 2.
3. 회부연월일 : 2024. 10. 4.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인 “금원(金員)”을 “금품”으로 순화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금원(金員)’을 ‘금품’으로 용어 변경

개정안은 ‘금원(金員)’을 ‘금품’으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세제 지원 등) ①·② (생략)	제14조(세제 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는 협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재산 또는 <u>금원(金員)</u> 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損金)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③ ----- ----- ---- <u>금품</u> ----- ----- ----- -----.

현행법 제14조제3항에서는 정부가 한국장애경제인협회¹⁾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재산 또는 금원(金員)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損金)에 산입(算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1조(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① 장애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려면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안은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인 ‘금원(金員)’을 ‘금품’으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²⁾에서는 법령문에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나 어려운 한자어, 예스러운 말투, 어색한 번역 투 표현이나 복잡한 문장이 많으면 국민들이 법과 제도를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므로 국민에게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입법 의도와 제도를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음.

법제처가 제시한 법령 정비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법령문은 직접적으로 그 적용 대상이 되거나 필요해서 찾아보는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로 알기 쉽게 써야 하며, 어려운 한자어는 고유어나 쉬운 한자어로 고쳐 써야 함.

‘금원(金員)’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이므로, 이를 쉬운 한자어인 ‘금품’으로 순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는 정비 대상 용어인 ‘금원(金員)’을 ‘금액’ 또는 ‘금품’³⁾으로 고쳐 쓰도록 권고⁴⁾하고 있는데, 출연 또는 기부의 대상을 규정하는 법조문의 맥락상 ‘금품’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2)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10판 증보판), 2023, pp.5-12

3) 금원(金員): 돈의 액수.

금액(金額): 돈의 액수.

금품(金品): 돈과 물품을 아울러 이르는 말.(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4)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10판 증보판) 부록 ‘정비 권고 용어’, 2023, p.14

현행법 제14조제3항이 인용하고 있는 「소득세법」⁵⁾ 또는 「법인세법」⁶⁾에서도 ‘금품’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금원(金員)’은 사용되고 있지 않음.

문 의 처
02)6788-5465

5)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이하 생략)

6)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이하 생략)